

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3조의4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령           | 처분기준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  | 2차 위반   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|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| 지정 취소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나.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            |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| 지정 취소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다.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   |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지정 취소    |
| 라.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| 법 제23조의6 제1항제4호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지정 취소    |